

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(윤관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6324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11. 2.

발의자 : 윤관석 · 강훈식 · 박영선
이학영 · 박찬대 · 이수혁
이원욱 · 금태섭 · 남인순
이재정 · 안규백 · 박순자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사업시행자에게 그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단계별 현황 자료 등을 요구할 때 사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국민의 부담 및 불편을 야기함.

이에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한 행정조사의 사전통지 절차를 직접 규정하여 국민의 부담 및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.

또한, 시·도지사 등이 위촉한 재정비촉진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가 사업시행자 등에게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, 이를 법에서 규정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가. 총괄사업관리자의 행정조사 근거 명확화(안 제36조제2항)

재정비촉진사업 총괄사업관리자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사업시행자 등을 대상으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.

나. 행정조사 사전통지 강화(안 제36조제3항)

행정기관의 장 및 총괄사업관리자가 사업시행자 등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.

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제1항 중 “있다”를 “있으며,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총괄사업관리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 한 경우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·사업시행자·설계자·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재정비촉진사업의 참여자에게 재정비촉진 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.

제3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및 총괄사업관리자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·사업시행자·설계자 ·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재정비촉진사업의 참여자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부 칙

օ)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
대도시 시장 및 총괄사업관리자
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·사업
시행자·설계자·시공자 및 정
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재정비
촉진사업의 참여자에게 자료를
요구하는 경우 요구 7일 전까지
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